

- 전력조회 절차 및 방법

- 전력조회 대상기관: 경력증명서(기타 증빙자료) 발급 기관
- 전력조회시 확인사항: 담당업무, 경력기간, 직위, 정규직원 여부 등 경력 인정과 관련된 사항
(예) 공공법인 경력의 경우: 법인의 설립근거, 담당업무(행정·경영·연구·기술 분야) 및 정규직원 여부 등

(2) 경력환산율표 적용에 대한 예외(영 제8조제3항)

-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동안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전에 인정받던 경력을 인정함
 -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퇴직당시의 경력 환산율표와 동일한 경력 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어야 하며,
 - 퇴직당시 호봉산정의 기초가 된 경력과 환산율을 적용하는 것이 임용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한 경우여야 함

(3) 경력환산율표 적용

- 예규 [별표 1]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적용 기준에 따라 적용
- 추가로 대상 경력의 예규 [별표2] 교육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 비고1에 따른 경력환산율 상향 인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, 해당 시 상향조정

나) 경력기간의 계산

※ 이하 경력기간의 계산에 대한 내용은 「보수지침」을 따르며, 아래 '교육공무원 적용 예시'를 참고

(1) 인정대상 경력기간 계산('보수지침')

- 경력기간은 연·월·일까지 계산하되, 역(曆)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('민법' 제160조 참조)

[참조] 「민법」 제160조(역에 의한 계산)

- 기간을 주,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함
- 주,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,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함
-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함
-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각 경력을 계급별로 구분한 후 경력 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하며, 12월은 1년으로, 30일은 1월로 각각 계산함
-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하되, 군복무기간의 퇴직(전역)일 또는 근무기간이 정하여진 임기제공무원 등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함
- 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(영 제8조제2항)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함